

|        |             |
|--------|-------------|
| 의안번호   | 2202818     |
| 의 퇴 인  | 한정애의원       |
| 회 답 일  | 2024.10.25. |
| 추 계 번호 | 24C2836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국고에서 그 금액을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026년 829억원, 2030년 983억원 등 5년간 총 4,529억원(연평균 906억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 구 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출산수당 및 정부지원<br>(안 제49조의2 제108조의2) | 829  | 868  | 906  | 944  | 983  | 4,529 | 906 |

주: 본 추계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현행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출산 및 유산·사산 전후급여 수급자 비중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안 제4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기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49조의2<br>(출산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은 가입자의 출산,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하여 출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출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제1항)</li> <li>○ 제1항에 따른 출산수당의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으로 함(제2항)</li> <li>○ 그 밖에 출산수당의 구체적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 경우 출산수당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제3항)</li> </ul> | 의무지출 |
| 2  | 안 제108조의2<br>(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함(제1항)</li> <li>2. 제49조의2에 따른 해당 연도 출산수당 예상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li> </ul>                                                                                                                                                                                                                                                                 | 의무지출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br>여부 |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 1  | 안 제49조의2<br>(출산수당)           | ○        | -              |
| 2  | 안 제108조의2<br>(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지급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개정안은 건강보험 출산수당 지급대상자를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sup>1)</sup>(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고용보험법」 제76조의2),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4)<sup>2)</sup> 및 노무제공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9)<sup>3)</sup> 포함)를 제외한 자”로 명

1)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출산수당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한정함

-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간주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정함<sup>4)</sup>
- 다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제도 간의 가입 규정 차이로 인하여 <sup>①</sup>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예술인, 일부 노무제공자 등), <sup>②</sup>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시,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근로자 등<sup>5)</sup>)가 존재할 수 있으나, 정보의 한계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출산수당의 대상자로 가정함<sup>6)</sup>

□ 출산수당 지급액은 개정안에 따라 2025년 생계급여 1인 가구 최저보장수준(765,444원)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을 3개월 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고시하고 있음(2024년 기준 210만원)

- 
- 3)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4)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 5)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니지만, 정부 또는 각 소속기관에서 출산전후급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의 대상에서도 제외함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출산수당 지급 대상자 수에 출산수당 단가와 수당 지급 기간(3개월)을 곱하여 추계
- (대상자 수) 연도별 여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 전망치에 출산수당 지급 비율을 곱하여 전망
  - 여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는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2024.10.)에 따른 지역가입자 세대원 수 전망치를 준용
    -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에 2023년 기준 전체 지역세대주 대비 여성 지역세대주 비율(36.9%)을 곱하여 산출
  - 출산수당 지급 비율은 고용보험의 최근 3년(2021~2023년) 평균 여성 피보험자 수 대비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수급자 수 비율(1.11%)<sup>7)</sup>을 준용
    -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수급자 수 비율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출산수당) 2025년 생계급여 1인 가구 최저보장수준인 765,444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4.10.)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추계결과,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29억원, 2030년 983억원 등 5년간 총 4,529억원으로 추계됨

---

7)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 수급자 수는 근로자 및 예술인, 노무제공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수급자를 모두 합한 수치임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 구 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연평균 |
|----------------------------------|------|------|------|------|------|-------|-----|
| 출산수당 및 정부지원<br>(안 제49조의2제108조의2) | 829  | 868  | 906  | 944  | 983  | 4,529 | 906 |

주: 본 추계에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현행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출산 및 유산·사산 전후급여 수급자 비중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안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기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V. 작성자

###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사회비용추계과 | 임슬기 | 이진우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임슬기 | 02-6788-4740 | sg.lim@assembly.go.kr |